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2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6. 5. 1  
제안자 : 최광렬의원외 6인

#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(대통령령 제19322호 2006.2.8)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유급화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제명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”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- 나.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(안 제1조, 제3조)  
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·여비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정함)

### 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32조
- 나.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(별표5,6,7)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”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회기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조(월정수당 지급)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.  
② 월정수당은 1,490,000원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 
③ 월정수당은 사하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별표1(국내여비지급표)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</p> <p>.....  ..... <u>회기수당</u> .....  .....</p> <p>제3조(회기수당 지급)</p> <p>① <u>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(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</u>  <u>다)</u>  <u>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<u>회기수당은 회기일수 1일에 100,000원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</u></p>	<p><u>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</p> <p>.....  ..... <u>월정수당</u> .....  .....</p> <p>제3조(월정수당 지급)</p> <p>① <u>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<u>월정수당은 1,490,000원으로 지급한다.</u>  <u>다만,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</u></p> <p>③ <u>월정수당은 사하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</u></p>

## [별지 1]

## 국내여비지급표(제6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일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
의회의원	1 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

- 비고 : 1.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2.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새마을호특실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3. 수로여행시 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